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792호	성일종의원	2024.1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5846호	서지영의원	2024.11.25.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6461호	이개호의원	2024.12.13.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6939호	정을호의원	2024.12.26.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8549호	전진숙의원	2025. 2.27.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8. 25.)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 8. 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음(안 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43조의3제4항 단서 신설).

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평가”를 “평가·해산”으로 한다.

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

7의3. 제43조의3제4항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방법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 ----- -----평가·해산-----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

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신 설>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54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
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
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
영 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
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
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
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